

검 토 보 고 서

■ 조례명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징감한다. (개정조례안 제11조의 2호)
- 개정안
 -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 개정사유

-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코자 함.

■ 검토결과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 기준면적을 60㎡이하를 85㎡이하로 확대한것으로써, 지방세수에는 다소의 감소가 예상되나,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지방세법 제9조(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였고,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